

| | |
|-----------|----------------|
| 의안번호 | 제340호 |
| 의결 연월일 | 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19년 12월 10일 |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0

제출연월일 : 2019년 12월 1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 위임권한의 변경, 근거 법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 : 2건(별표 1)

<근거법령개정에 따른 신설 2건>

- (균형발전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대상 기반시설(1건)
 -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사무명 신설
- (수질관리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1건)
 -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명 신설

- 삭제 : 10건(별표 1)

<중복 위임사무 삭제 1건>

- (자연재난과)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 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및 검사의뢰·준공검사·공사비 예치에 관한 업무(1건)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삭제 9건>

- (자연재난과)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에 관한 업무(1건)
 - ‘죽목의 식재’ 사무명 삭제

- (식의약안전과)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사무(3건)
 -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 교부’,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 양도승인’ 사무명 삭제
- (균형발전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대상 기반시설(5건)
 - ‘운동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공동묘지’ 사무명 삭제

○ 그 밖의 개정사항 : 13건(별표 1)

<위임사무명 개정 : 9건>

- (자연재난과 : 7건)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건)
 - 지방하천 구역에서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2건)
 -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2건)
 -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변경 인가·고시·검사의뢰 및 준공검사(1건)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조사·통지(1건)
- (균형발전과 : 2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대상 기반시설(2건)
 - 장례식장 →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근거 법조항 개정 : 4건>

- (자연재난과 : 2건)
 - 지방하천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에 관한 업무(1건)
 - 도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업무(1건)
- (수질관리과 : 2건)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2건)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무명 | 근거법령 |
|-------|------|--|---|
| 세정담당관 | 1 |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
| 자연재난과 | 1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 하천법 제5조 |
| | 2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14조 |
| | 3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 4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 같은 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 | 5 |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 같은 법 제29조 |
| | 6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라.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마. 인가내용 고시 바.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0조제10항 |
| | 7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제9항 |
| | 8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 실시계획인가 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같은 법 제32조 |
| | 9 |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가. 토지의 점용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자연재난과 | |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
| | |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
| | |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
| | | 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
| | | 자.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
| | |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
| | |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
| | 10 | · 지방하천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33조제7항 |
| | 11 | ·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 | 12 |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 | 13 | ·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 같은 법 제38조제1항 |
| | 14 |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신축 또는 개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인가·고시·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 같은 법 제38조제4항 |
| | 15 |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 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 | 16 |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 | 17 |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관리 |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자 연 재 난 과 | 18 |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 처 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 하천법 제69조 |
| | 19 | · 지방하천에서 허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 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 같은 법 제70조 |
| | 20 |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 같은 법 제72조 |
| | 21 |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 보수· 시정 등 조치 |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
| | 22 |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등 | 같은 법 제76조 |
| | 23 |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 물건 등의 사용· 수용 | 같은 법 제78조 |
| | 24 |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 고 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 검사 | 같은 법 제90조 |
| | 25 |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 승 인 취소 시 청문 | 같은 법 제91조 |
| | 26 |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98조 |
| | 27 |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 | 28 | · 보상금의 공탁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8조 |
| | 29 |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 같은 법 제9조 |
| | 30 |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 31 | · 보상금액의 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 32 | · 보상금 지급의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33 | · 도유재산 용도폐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 34 |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 수익허가 |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무명 | 근거법령 |
|--------------|------|--|---|
| 민간협력 공동체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 라.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 <p>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56조</p> <p>같은 법 제57조</p> <p>같은 법 제119조</p> |
| 회계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협의 사항에 한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
| 복지 정책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단,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보고 | 같은 법 제1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 같은 법 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재산의 취득 보고 | 같은 법 제24조 |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구호에 관한 다음사항 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나. 음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마. 위생지도 바. 장사의 지원 | 같은 법 제51조 |
|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축하금의 지원, 환수, 대장의 관리 | 입양특례법 제3조 및 제41조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16조 |
| 보건 정책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 반환, 회수, 환수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식 의 약 안 전 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다.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 마.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도매보고 바. 마약의 소매 보고 사. 행정처분 아. 청문 자.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차.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카. 몰수마약류의 폐기·처분 | <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p> <p>같은 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p> <p>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p> <p>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p> <p>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p> <p>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p> <p>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6조</p> <p>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p> <p>같은 법 제53조</p> |
| 경 제 기 업 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 | <p>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p> <p>같은 법 제5조제1항</p> <p>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p> <p>같은 법 제12조제1항</p> <p>같은 법 제12조제7항</p> <p>같은 법 제13조제1항</p> <p>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p> <p>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p> <p>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p> <p>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p>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경 제 기 업 과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권한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관한 권한 나. 지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관한 권한 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p>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p> <p>같은 법 제33조의2</p> <p>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p> <p>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p> |
| 투 자 유 치 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산업단지는 제외하며, 그 밖에 KGB복합, 옥산, 오창제2, 오창제3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청주시에 위임한다.) |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p>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양도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 | <p>같은 법 제43조의3</p> <p>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p>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p>같은 법 제55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60조</p> |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p> |
| 에 너 지 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p>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p> <p>같은 법 제39조제6항</p> <p>같은 법 제40조제4항</p> <p>같은 법 제78조제4항</p>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 | <p>같은 법 31조제1항</p> <p>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p> <p>같은 법 제78조제4항</p> |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 <p>전기사업법 제71조</p> |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에너지과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 변경,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청문 등 나. 비법정단위 사용에 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 명령 다. 자체수리자 지정 및 변경신고 처리 라. 수입업자 및 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마.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 검사의 증인 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취소, 정량의 표시명령·정정요구 사. 보고 및 조사 등 아. 개선명령 자. 부정계량기의 처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차. 지위 승계신고 및 처리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제66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42조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2조, 제 55조, 제56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76조 |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선·수거·과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
|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선·수거·과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42조 |
| |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운행정지 명령 나.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다.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8848호,2008.1.17> 제2항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제21조제2항제2호·제3항 같은 법 제28조 |
| 농업 정책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 다음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나. 생산기반정비사업중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준공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유 기 농 산 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농어촌정비법 제9조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 같은 법 제17조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 같은 법 제24조 |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 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단,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 | 같은 법 제26조 |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유재산 용도폐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 축수산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관한 사무 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공고 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 마. 보호비용 청구 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권 취득 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분양·기증 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 동물보호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문화예술 산업과 | 1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관한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 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 마.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바. 청문 사. 수수료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p>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p> <p>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4항,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법 제29조</p> <p>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p> |
| 건축 문화과 | 1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등에 관한 권한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 | <p>주택법 제16조</p> <p>주택법 제43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p> |
| 균형 발전과 | 1 2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예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 시장·군수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등으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 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군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바.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 사.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 아. 공동구 자. 공공공지 차. 수도공급설비 카. 전기공급설비 |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항</p> <p>같은 법 제30조, 제50조</p> <p>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p>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균형발전과 | | 타. 가스공급설비 파. 방송·통신시설 하. 시장 거. 열공급설비 너.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 더.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러. 문화시설 머. 연구시설 버. 사회복지시설 서. 공공직업훈련시설 어. 청소년 수련시설 저. 우수지 처. 방화설비 커. 저수지(댐 제외) 터. 방풍설비 퍼. 방수설비 허. 사방설비 고. 방조설비 노. 하수도 도. 도축장 로. 장사시설 모. 종합의료시설 보. 폐차장 소.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초. 하천(소하천에 한함) 코.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토.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포.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 |
| | 4 | · 기준면적포함 15만㎡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 및 변경 | 같은 법 제30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 | 5 |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 | 같은 법 제32조 |
| | 6 |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 같은 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
| | 7 |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 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
| | 8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 같은 법 제98조 |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균 형 발 전 과 | 9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 담보, 열람 및 고시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부터 제91조 |
| | 10 |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133조 |
| | 11 | ·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개발계획변경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도시개발법 제4조 |
| | |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고시 | 같은 법 제9조 |
| | |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
| | |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 같은 법 제19조 |
| | |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 같은 법 제20조 |
| | |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 같은 법 제26조 |
| | |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같은 법 제58조 |
| | |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 같은 법 제66조 |
| | |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 같은 법 제68조 |
| | 12 |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 | 같은 법 제13조 | |
| 나. 선수금 승인 | | 같은 법 제25조 | |
| 다. 준공검사 | | 같은 법 제50조 | |
|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 | 같은 법 제51조 | |
|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 | 같은 법 제52조 | |
| 13 | ·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 같은 법 제53조 | |
| |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 | |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
| | | | 나.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
| | | |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
| 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 |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무명 | 근거법령 |
|-----|------|---|--|
| 도로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나. 점용공사의 확인 다. 점용료의 징수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 바. 변상금의 징수 사. 원상회복 사. 수수료의 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법 제61조, 91조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103조 같은 법 제117조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제40조제4항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 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라. 분할·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 |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 가.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다.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라. 법령위반 등에 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바. 도로에 관한 조사 사.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 아.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69조, 90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10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로법 제52조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유재산 용도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교통 정책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 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 취소, 사업정지 명령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 <p>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p> <p>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p> <p>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제21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31조</p>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 마.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 취소 바. 등록번호표의 반납 사.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세김 명령등 아.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자.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차.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p>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의2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p> <p>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제35조의2</p>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p> |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시·군 내 사업의 한정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p> |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사용정지 | <p>같은 법 제89조</p> |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다. 공사의 완성 라. 사용개시 마. 사용약관 인가 |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p> <p>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제4항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p>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교통 정책과 | | 바.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아. 터미널의 관리 자.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차. 사업개선 명령 카. 사용명령 타.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 시 관계 행정기관장 간의 협의 및 통보 파.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하. 재정지원, 조합감독 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너.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더. 정관변경 등의 명령 러. 면허의 취소 머. 청문 버. 과징금 처분 7.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처리 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라.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마. 신고포상금 지급 등 8.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차. 청문 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9.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시외버스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7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 제57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항, 제35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22조제1항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교통정책과 | 10 |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및 차령 초과 운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
| | 11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군 내 사업의 한정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사업의 면허·등록 | 같은 법 제4조 |
| | | 나. 수송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연기·개시기간연장 승인 | 같은 법 제7조 |
| | | 다. 운임·요금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8조 |
| | | 라.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9조 |
| | | 마. 사업계획변경 인가·등록 및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0조제1항 |
| | |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3조 |
| | |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4조 |
| | | 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5조 |
| | | 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6조 |
| | | 차.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9조제2항 |
| | | 카.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 같은 법 제23조 |
| | | 타.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 같은 법 제85조 |
| 파. 청문 | 같은 법 제86조 | | |
| 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그 징수 | 같은 법 제88조 | | |
| 거.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 같은 법 제94조 | |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환경 정책 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명령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 승인 및 통보 하. 허가증의 재교부 거.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연장승인 | <p>폐기물관리법 제25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제32조제2항</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6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61조</p> <p>같은 법 제68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p> <p>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p>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변경) 승인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p> <p>같은 법 제21조, 제22조</p> <p>같은 법 제23조</p> <p>같은 법 제25조, 제26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제29조</p>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1조, 제33조</p>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환경정책과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 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형 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무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시 통보서 접수에 관한 사무 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 시설의 개선 내역, 다이옥신 검사결과, 고형연료 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의10 별표 10</p> |
| 기후대기과 | 1 2 3 4 5 6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한 다음 사무(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기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나.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설치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 조치명령 라. 조업정지명령 등 마.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 수리 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 위법시설에 관한 폐쇄조치 등 차.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 보고 및 검사 등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 <p>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같은 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17조</p> <p>같은 법 제23조</p> <p>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제32조제6항, 제34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4항</p> <p>같은 법 제41조제4항</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p> <p>같은 법 제82조</p> <p>같은 법 제94조</p> |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기 후 대 기 과 | 8 |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4항 |
| | 9 |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수질 1~5종 사업장) 가. 대통령이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 관리 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 | 같은 법 제38조의2 같은 법 제38조의3 |
| | 10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 같은 법 제68조 |
| | 11 |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12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 | 13 |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재활용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다.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라.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명령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제24조의2 같은 법 제25조제3항 |
| | 14 | · 석면안전관리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나.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다.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라.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마.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 15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자동차 단속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수 질 관 리 과 | 1 | ·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 |
| | | 가. 먹는물에 관한 수질검사(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는 제외) | |
| | 2 | · 수처리제 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등록 및 변경등록 | 같은 법 제21조제2항 |
| | |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1조제7항 |
| | |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 같은 법 제24조 |
| | |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5조제3항 |
| | |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 같은 법 제41조제2항 |
| | | 바. 출입·검사·수거 등 | 같은 법 제42조 |
| | | 사. 지도 및 개선명령 | 같은 법 제45조 |
| | |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 같은 법 제46조 |
| | | 자. 폐기처분 등 | 같은 법 제47조 |
| | |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같은 법 제48조 |
| | 카. 청문 | 같은 법 제50조 | |
| |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 같은 법 제51조제1항, 제3항 | |
| | 파. 위반사실 등의 공표 | 같은 법 제51조의2 | |
| |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 같은 법 제61조제2항, 제3항 | |
| | 3 | ·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 등 | 같은 법 제42조 |
| | 4 |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
| | | 나.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68조 |
| | | 다.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2조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무명 | 근거법령 |
|-----------|------|--|--|
| 산림 녹지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사무 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p>산림보호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11조</p>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다. 보호수에 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 | <p>같은 법 제13조</p>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 <p>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산림청고시 제2013-87호></p> |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다. 복구비의 예치 등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 신청의 접수 사.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자. 복구비의 반환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 <p>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p> <p>같은 법 제41조</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3조</p> <p>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p> <p>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3항</p> <p>같은 법 제49조, 제57조</p> |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후계자의 선발·육성에 관한 사항 |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p> |

관계 법령 발췌

공통사항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자연재난과

□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삭제

②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에 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 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 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 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 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식의약품안전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5.18]

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삭제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승인번호 및 허가·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 및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환자 또는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만,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소매업자는 해당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제27조(마약의 도매 보고) 삭제

제29조(마약의 소매 보고) 삭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5.18]

제37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 반기의 대마초의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대하여 매 반기가 종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균형발전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 시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수질관리과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를 한 자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7. 제6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삭제

4. 삭제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